



KOREA CUSTOMS SERVICE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 2동 920번지
정부 대전청사 1동(3~7층)




한·칠레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따라하기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http://www.customs.go.kr>



한·칠레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따라하기

CONTENTS

I. 원산지증명서 이해하기 5

- 칠레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합니다!
- 원산지증명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1)
- 원산지증명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2)
- 원산지증명서는 언제 작성하나요?
- 원산지증명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한국산이란 무엇인가요?
- 원산지결정기준이란 무엇인가요?

II. 원산지증명서 작성 따라하기 12

-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 원산지결정기준 적용
- 원산지증명서 발급

III. 알아두면 좋은 정보 23

- 원산지 자문제도
- FTA 관련 문의처
- FTA 관련 기관 홈페이지
- FAQ

IV. 원산지결정기준 적용 절차도 25

V. 품목별원산지확인기준 예시 26

I. 원산지증명서 이해하기

칠레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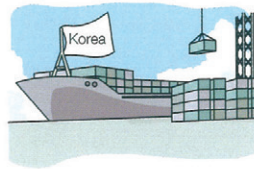
- 한·칠레 FTA가 4월 1일 발효됨에 따라 칠레의 수입자는 FTA 특혜를 받기위해 계약 체결시 국내 수출자에게 다른 선적서류와 함께 원산지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게 됩니다.
- 원산지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동·식물이 성장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며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란 그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 특히 한·칠레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직접 작성·발급하여야 합니다.



수출계약



제품생산·무역서류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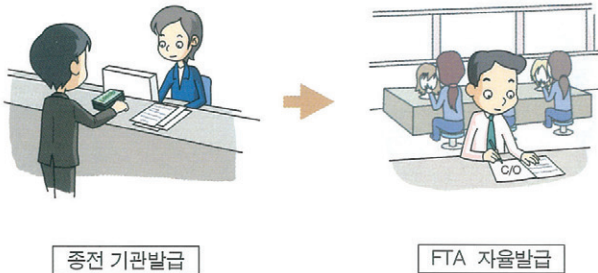


선적(수출이행)

원산지증명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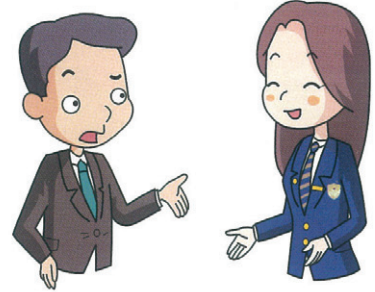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제도”란 수출자가 협정 및 법령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수출자 스스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하는 제도입니다.
- 종전의 다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였지만 자율발급제도는 이런 신청과 수수료 부담이 전혀없어 수출자의 편의 제고와 경비 절감에 도움을 줍니다.
- 하지만 편리해진 만큼 원산지관련 자료보관 및 제출, 칠레 세관의 원산지검증에 대한 협력 등의 책임과 의무도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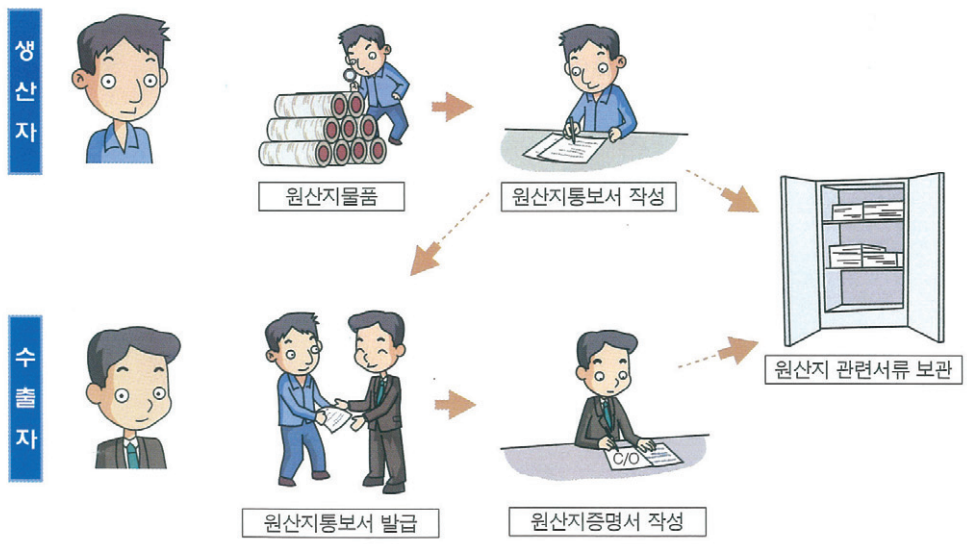
원산지증명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2)

생산자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제품 생산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요?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통보서를 근거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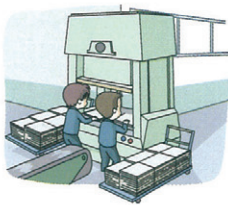
- 생산자는 수출자에게 판매할 제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한국산 물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원산지통보서를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에 따라 당해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고 원산지통보서를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수출자와 생산자 모두 원산지 관련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언제 작성하나요?



- 칠레측 수입자가 당해 수출물품의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invoice, packing list 등 선적서류를 작성하는 시점 즉 수출물품의 생산이 완료된 이후에 작성하게 됩니다.
- 이것은 수출물품의 원재료 소요량 및 제조원가의 변동 또는 거래선 변경에 따른 원재료의 원산지와 가격 변화 등을 생산 완료 이전에 파악이 곤란하거나 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런 변경 요인은 당해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산이 아닌 물품을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결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제품 생산



원산지증명서 작성



수출

원산지증명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당해 수출물품의 원산지는 한·칠레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정해지는데 그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만이 한국산으로 인정됩니다.
- 원산지가 한국으로 확인된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데 이때 증명서 양식과 작성요령은 양국세관에서 인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또한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를 지정하고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하여 발급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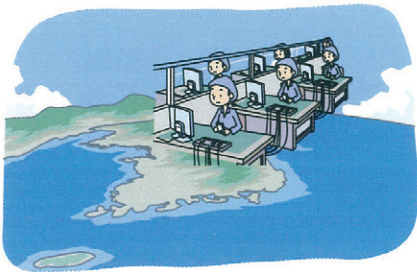
원산지 결정

통일 양식·작성요령

한국산이란 무엇인가요?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칠레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이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원산지가 한국이 되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당해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와 제품간의 HS변경 또는 부가가치 발생이 한·칠레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국내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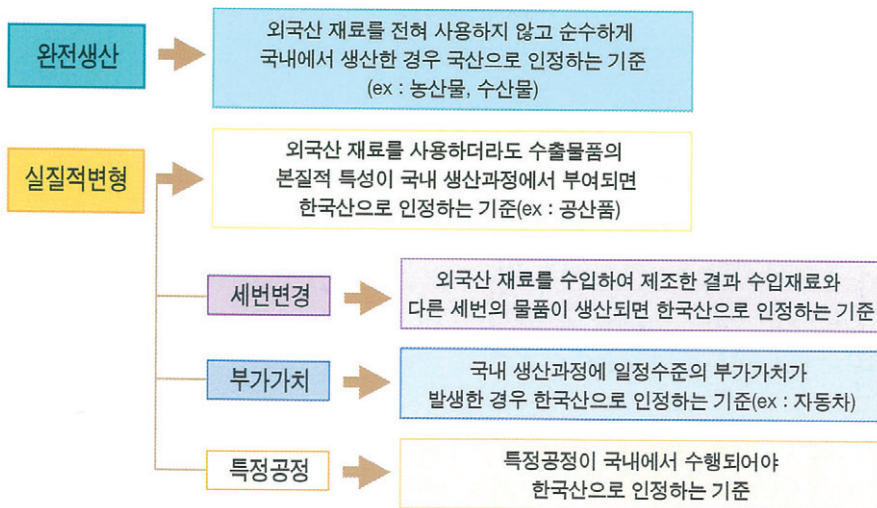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원산지 결정기준이란 무엇인가요?



- 수출물품의 원산지는 수입국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대 칠레 수출물품 원산지 결정은 한·칠레 FTA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되며 양국간 공통기준입니다.
- 한·칠레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크게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실질적 변형기준에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이 있는데 이 중 두 가지 기준이 함께 적용되는 물품도 있습니다.



II. 원산지증명서 작성 따라하기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 수출물품의 세번(HS)확인

- 수출물품의 세번은 종전 동일물품 수출(거래)시 적용했던 수출입신고필증, 기납증상의 세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수출물품의 세번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세사, 관세종합상담센터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출물품 세번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려면 「한·칠레FTA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 품목별원산지확인기준」을 찾아보면 됩니다.
-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은 HS4단위(호) 또는 HS6단위(소호) 품목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해당 원산지결정기준이 바로 당해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산 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수출하는 경우

- 수출신고필증 확인 결과 HS3907로 확인
-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확인 결과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2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 또는 직접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기준

- 「한·칠레 FTA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 품목별원산지확인기준」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공지사항(302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원재료의 구입경로 확인

- BOM, part list 등을 통해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내역을 확인하고 원재료 별 구입경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구입경로 확인이란 원재료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으로 직접 수입, 수입원재료 국내 구입 또는 국내 생산재료 구입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 이를 통해 개략적인 재료의 원산지, 비원산지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원산지결정기준의 적용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원산지결정기준 적용

■ 세번변경기준 적용

- 세번변경기준이란 국내 생산과정에서 비원산지재료의 HS가 수출물품의 HS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정한 세번변경이 발생한 경우 당해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List와 재료별 HS, 구입경로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 세번변경기준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 다른 류에서 ~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미삼(HS12류) → 인삼추출액(HS13류)

· 다른 호에서 ~ : 4단위 세번변경기준
견사(HS5006) → 견직물(HS5007)

· 다른 소호에서 ~ : 6단위 세번변경기준
아연괴(HS7901,11) → 아연합금(HS7901,20)

- 앞의 예와 같이 HS5007 견직물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며 비원산지재료인 수입산 견사 HS5006이 수출물품인 견직물 HS5007로 HS 4단위 세번 변경이 발생되었으므로 한국산 견직물로 인정됩니다.



■ 부가가치기준 적용

- 부가가치기준이란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을 통해 국내에서 창출되고 법령에 따라 계산된 부가가치가 품목별원산지확인기준에서 정한 비율 이상인 경우 당해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List와 구입경로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 부가가치비율 계산 방법은 두가지가 있으며 수출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text{공제법}^{1)} : \text{역내부가가치비율} = \frac{\text{조정가격} - \text{비원산지재료 가격}}{\text{조정가격}} \times 100$$

$$\text{직접법}^{2)} : \text{역내부가가치비율} = \frac{\text{원산지재료 가격}}{\text{조정가격}}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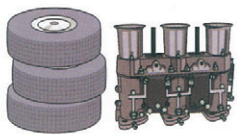
1) 공제법 : Build-Down method (BD)

2) 직접법 : Build-Up method (B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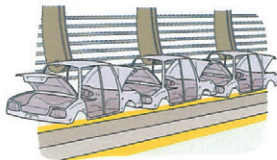
- 조정가격이란 일반적으로 수출물품의 FOB 가격을 말합니다.
- 비원산지재료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재료로서 보통 수입 원재료를 말하며 그 가격은 해당 원재료의 조정가격(FOB가격)이 됩니다.
- 원산지재료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재료로서 보통 국내 구입재료를 말하는데 그 가격은 실제 구입가격 즉 장부상 취득가격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비원산지 재료는 수입산 재료, 원산지 재료는 국내 생산 재료를 말하나 주의할 점은 국내에서 구입한 재료라 하더라도 제 3자가 수입한 재료이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내 생산 재료는 비원산지재료로 분류됩니다.

-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역내부가가치비율이 공제법의 경우 45%, 직접법의 경우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입산 원재료 - 가격 100만원



생산



자동차 - FOB 가격 300만원

$$\text{공제법} \frac{300 - 100}{300} = 66\%$$

아, 한국산이구나.

■ 선택기준과 조합기준 적용

선택기준

- 수출물품에 대하여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이 동시에 제시된 경우 수출자가 그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 HS3907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수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2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 또는 직접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1호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2호의 부가가치기준 중 하나를 수출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어느 것이든 충족하는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됩니다.

조합기준

- 수출물품에 대하여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 2개 이상의 기준이 동시에 제시되고 그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원산지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 HS8525 휴대폰을 수출하는 경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25호 내지 제852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 또는 직접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만 한국산으로 인정되며, 다만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공제법 또는 직접법은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 원산지증명서 양식(고시 별지 제 9호 서식)

-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양국이 합의한 아래 양식으로 수출자는 반드시 이 양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Issuing Number :

1: Exporter(Name and Address)						Tax ID No:	
2: Producer(Name and Address)				3: Importer(Name and Address)			
Tax ID No:							
4. Description of Good(s)	5. HS No.	6. Preference Criterion	7. Producer	8. Regional Value Content	9. Country of Origin		
10. Remarks:							
11: Certification of Origin							
I certify th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d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c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 The goods originated in the territory of the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There has been no further production or any other operation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2 of the Agreement.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Name(Print or Type)				Title			
Date(MM/DD/YY)				Telephone / Fax / Email			

■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 원산지증명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영문으로 작성·서명되어야 하고,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이해하기 쉽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항 목	기 재 조 건	기 재 사 항
Issuing Number		· 원산지증명서 일련번호 기재(작성대장) · 회사가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것임
1. Exporter		· 수출자의 이름, 주소(국가 포함),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2. Producer	· 생산자가 1명일 경우	· 생산자의 이름, 주소(국가, 전화번호, 팩스, e-mail 포함),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생산자가 2명 이상일 경우	· “VARIOUS” 기재 · 모든 생산자의 리스트를 첨부 (생산자의 이름, 주소, 국가, 전화번호, 팩스, e-mail 포함),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생산자와 수출자가 같을 경우	· “SAME” 기재
	· 생산자를 모를 경우 · 비밀로 할 경우	· “UNKNOWN” 기재 ·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 기재
3. Importer	· 수입자를 알지 못할 경우 · 수입자가 다수일 경우	· 수입자의 이름, 주소(국가 포함) 기재 · “UNKNOWN” 기재 · “VARIOUS” 기재
4. Description of Good(s)		· HS 및 송품장과 관련시킬 수 있는 상세한 상품의 설명을 기재 · 송품장번호 기재
	· 송품장번호를 모를 경우	· shipping order, purchase order number 등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번호 기재
5. HS No.		· 항목4의 각 물품에 대하여 HS 6단위까지 기재

항목	기재조건	기재사항
6. Preference Criterion	· 아래 특혜기준 참조 ※	· 항목4의 각 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혜기준(A 내지 D) 기재
7. Producer	· 항목4의 각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의 생산자일 경우	· “YES” 기재
	· 생산자가 아닌 경우	· “NO” 기재
8. Regional Value Content	· 물품이 역내부가가치 비율 대상인 경우, 공제법(build-down method)에 의해 계산될 경우	· “BD” 기재
	· 직접법(build-up method)에 의해 계산될 경우	· “BU” 기재
9. Country of Origin	· 원산지가 한국일 경우	· “KR” 기재
	· 원산지가 칠레일 경우	· “CL” 기재
10. Remarks	· 송품장(invoice)이 비원산지국에서 작성되었을 경우	· 작성자의 이름, 회사명, 주소를 기재

※ 6란 특혜기준(Preference Criterion)기재조건

A : 물품이 협정 4.2.1(a)에서 언급된 대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주) 그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완전하게 획득하거나 생산된 경우”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B : 물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생산되고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 부속서(Annex 4)에 규정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및 협정4장에 규정된 다른 적용 가능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협정 4.2.1(b))

C : 물품이 협정제4.2조의 제1(a)항 내지 제1(d)항의 기준에 의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원산지재료만으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생산된 경우(협정 4.2.1(c))

D : 물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생산되었으나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하나 이상의 비원산지 재료가 협정 4.2.1.C(i,ii)규정에 해당하여 세번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한 경우(협정 4.2.1(d))

(주) 이 요건은 HS 제61류 내지 제63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제외한다.

■ 4번, 6번, 8번, 10번 항목 세부기재 요령

4번 항목 “Description of Good(s)”

- 원산지증명서 4번 항목 Description of Good(s) 란에는 송품장 및 HS와 연관 지어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상세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출물품과 원산지증명서와의 관련성 확인을 위해 송품장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송품장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shipping order number, purchase order number, B/L number 중 하나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6번 항목 “Preference Criterion”

- A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 1차 산업 및 광업에서 생산되는 물품과 그 파생제품이 여기에 해당되며 역내산 농수축산물 등만을 원료로 제조한 물품의 경우 생산단계에 관계없이 이 기준에 해당됩니다.
- B는 제조업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이 해당되며 한·칠레 FTA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의 품목별 원산지 확인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 C는 A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 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물품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산지 재료란 수입물품을 원료로 사용한 재료를 말한다.
- D는 재료와 제품의 HS 4단위 또는 6단위가 같아 세번변경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여 그 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이 여기 해당됩니다.

8번 항목 “Regional Value Content”

-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부가가치 기준이 아닌 경우 공란으로 놔둡니다.

10번 항목 “Remarks”

- 중계무역의 경우 송품장이 제3국의 중계무역상에 의해 작성되는데 이때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10번 항목 “Remarks” 란에 중계무역상의 이름, 회사명,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통보서 양식(고시 별지 제 10호 서식)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DECLARATION OF ORIGIN

Issuing Number :

1: Producer(Name and Address)					Tax ID No :					
2: Exporter(Name and Address)				3: Importer(Name and Address)				Tax ID No:		
4. Description of Good(s)	5. HS No.	6. Preference Criterion	7. Regional Value Content	8. Country of Origin						
9. Remarks:										
10: Declaration of Origin										
I certify th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d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declaration of origin,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c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declaration of origin. • The goods originated in the territory of the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There has been no further production or any other operation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2 of the Agreement.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Name(Print or Type)					Title					
Date(MM/DD/YY)					Telephone / Fax / Email					

※ 작성요령 :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을 준용하시면 됩니다.

■ 원산지증명서등 작성대장(고시 별지 제 12호 서식)

·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을 기재하는 대장으로 회사내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원산지증명서등 작성대장

원산지증명서 등의 번호	서명 일자	수입자	품명	수량	규격	HS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비고

■ 필수 확인사항

· 앞서 설명한 내용은 원산지결정,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실제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휴대폰을 수출하는 경우



휴대폰은 HS8525

수출계약

제품생산

HS확인

휴대폰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과 부가가치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구나~

세번변경, 부가가치기준 충족 휴대폰은 한국산

원산지기준 확인

원산지 결정

작성·발급

III. 알아두면 좋은 정보

원산지 자문제도

-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한·칠레 FTA 특례고시 제5-2-1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자는 관세청장에게 수출물품의 원산지와 관련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FTA 관련 문의처

- 관세청 공정무역과 전화 042-472-7830 / FAX 042-481-7753
☞ E-mail: kcsftd@customs.go.kr
- 관세종합상담센터 전화 1577-8577

FTA 관련 기관 홈페이지

- 한·칠레 FTA 협정문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게재
 - 관세철폐계획,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
☞ http://www.mofat.go.kr/ko/division/fta_new_9.mof
- 한·칠레 FTA 법·령·규칙
 -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게재
 - 원산지결정기준 일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등 FTA 협정의 국내법 수용
☞ http://www.mofe.go.kr/lib/lib_03_2.php
- 한·칠레 FTA 특례고시
 - 관세청 홈페이지 게재
 -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작성요령 등 FTA 법령의 위임사항 규정
☞ http://www.customs.go.kr/hp/homepage/dat/PFCS009_01.htm

FAQ

Q.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A.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직접 작성·발급합니다.

Q.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은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A. 수출자는 실제로 수출물품을 제조한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통보서를 제출받고 그 통보서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합니다.

Q. 원산지증명서 6번 항목(Preference Criterion)의 기재요령은?

A. 원산지증명서 제6번 항목은 특혜기준 즉 당해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각 기준별로 A~D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완전생산물품은 “A”를 세번변경, 부가가치, 특정공정 기준 적용물품은 “B”를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은 “C”를 세번변경특례 해당물품은 “D”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Q.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통보서를 모두를 칠레측 수입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나요?

A. 원산지증명서만 칠레측 수입자에게 송부하면 됩니다. 원산지통보서는 수출물품을 제조한 생산자가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서류이며 원산지증명서 작성의 근거서류로서 칠레측 수입자에게 통보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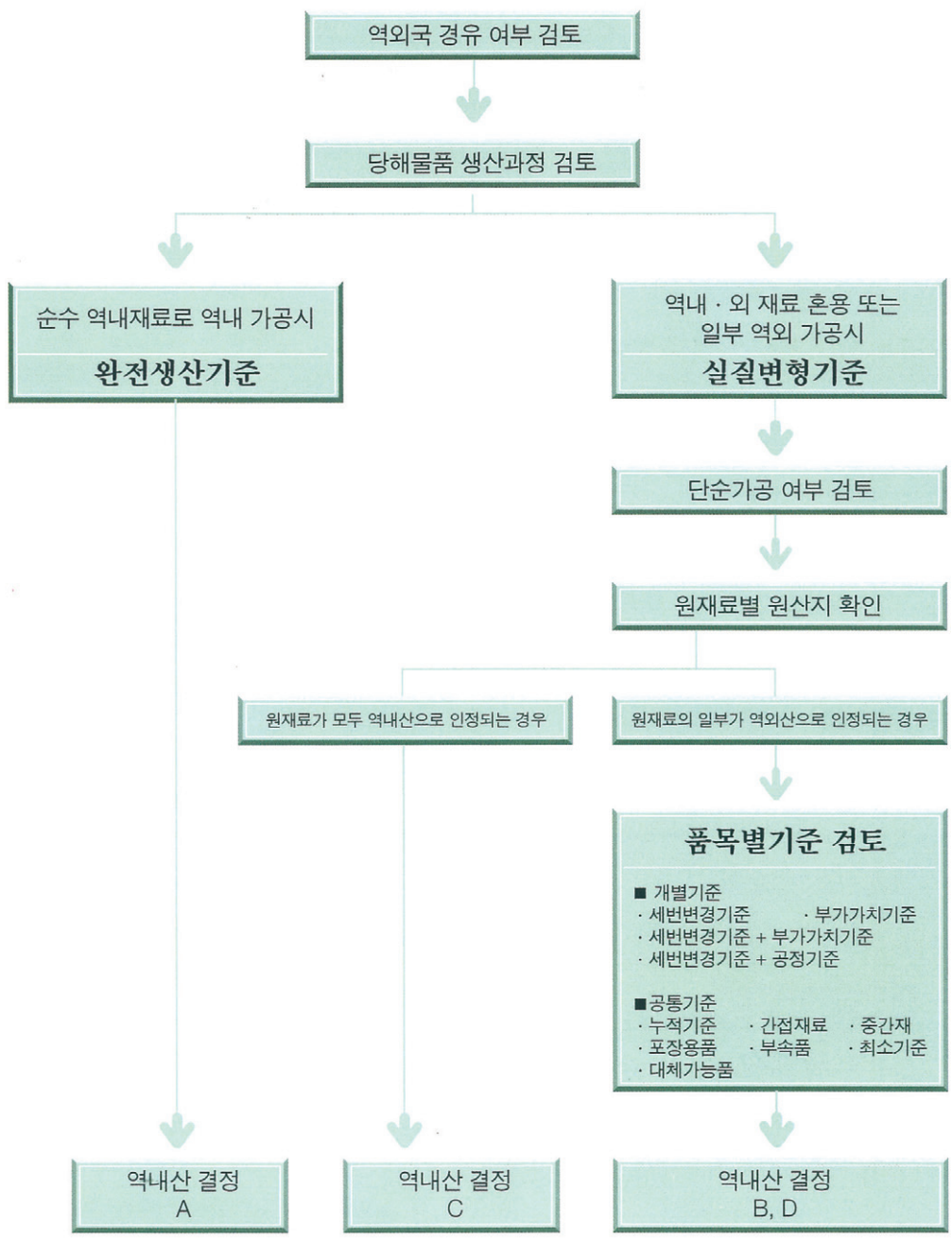
Q.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일반적으로 완전생산물품이 아닌 경우 한·칠레 FTA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 품목별원산지확인기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Q. 제3국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수출국의 수출자가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국이 아닌 제3국의 수출자(중개인)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IV. 원산지결정기준 적용 절차도



※ A~D : 특혜기준(Preference Criterion) 코드

V. 품목별 원산지확인기준 예시

[별표]

품목별 원산지확인기준

품목번호	품명	원산지 인정요건
8522	제8519호 내지 제8521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22호 내지 제852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단위세번변경기준
8523	음성기록용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현상 기록용의 매체(기록이 안된 것에 한하며, 제37류의 물품을 제외한다)	
8524	음성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현상이 기록된 레코드·테이프와 기타의 매체(레코드판 제조용의 매트리스와 마스터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을 제외한다)	
8525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라디오 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카메라·정지화상비디오 카메라·기타 비디오키메라레코더 및 디지털 카메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25호 내지 제852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 또는 직접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4단위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8526	레이다기기·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 원격조절기기	
8527	무선전화·무선전신 또는 라디오방송 수신용의 기기(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 또는 시계가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529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852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 제8529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2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 또는 직접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1. 4단위세번변경 > 중 선택 2. 부가가치기준

